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고시 제2021 - 4호

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· 고시
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 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·고시합니다.

2021년 4월 15일

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

1.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학교 현황

| 학교(유치원)명 | 위 치 | 보호구역 | 격 면적(m²)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|--|
| (가칭) |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| 절대구역 | 5,275.44 | 2023.3.1.자 단설유치원 신설에 따른 |
| 전주여의유치원 | 548-37 | 상대구역 | 234,833.50 |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|
| 전주만성중학교 | 전주시 덕진구 중동 803 | 절대구역 | 14,087.36 | 2022.3.1.자 중학교 신설에 따른 교육 환경보호구역 설정 |
| | | 상대구역 | 198,804.57 | |
| 전주공업고등학교 |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548-2 | 절대구역 | 1,364.52 | 기존 설정된 보호구역 중 동일 지번내 (가칭)전주여의유치원 신설에 따른 학교 경계 변경으로 인한 교육환경 보호구역 재설정 |
| | | 상대구역 | 479,247.89 | |
| 전주만성초등학교 | 전주시 덕진구 중동 803 | 절대구역 | 20,338.33 | 기존 설정된 보호구역 중 동일 지번내 전주만성중학교 신설에 따른 학교 경계 변경으로 인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재설정 |
| | | 상대구역 | 194,705.30 | |
| 전주만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| 전주시 덕진구 중동 803 | 절대구역 | 20,338.33 | 기존 설정된 보호구역 중 동일 지번내 전주만성중학교 신설에 따른 학교 경계 변경으로 인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재설정 |
| | | 상대구역 | 194,705.30 | |

2.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지역

가. 절대보호구역 : 학교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

나. 상대보호구역 :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 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

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

- ※ 단, 고시 시점에 학교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측 가능 시점에 절대보호구역 설정
- ※ 교육환경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상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 부터 200미터 까지의 전 지역은 토지분할, 지번변경 및 지번기재 누락 등의 경우에도 보호구역 해당
- 3.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: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
- 4. 교육환경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 열람

(인터넷 주소 : https://cuz.schoolkeepa.or.kr-지도찾기에서 확인)

- 5. 고시기간: 고시일로 부터 20일간
- 6. 참고사항: 기타 문의사항은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담당자(063-270-6106)에게 문의 바람.

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